

토론회자료 2002-18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에 관한 토론회

일시: 2002년 9월 18일(수) 15:00~18:0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2층)

주 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후 원: 보건복지부 · 대한노인회 ·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진행 순서 ◆

□ 14:30~15:00 등록 및 접수

□ 15:00~15:30 인사말 및 격려사

인사말 : 박순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격려사 : 김성호(보건복지부 장관)

□ 15:30~16:00 주제 발표

좌 장 : 최성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받 표 : 변재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16:00~17:30 지정토론

고양근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채영 (부산동구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모선희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동성 (순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은경 (마산치매전문요양원 원장)
이윤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정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정운태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박경호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과장)

(이상 가나다순)

□ 17:30~18:00 종합토론 및 폐회

목 차

제1장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수립배경 및 비전	1
I.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수립 배경	1
1. 노인인구 변화추세	1
2. 노인의 생활실태	2
II. 노인보건복지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4
1. 노인보건복지정책 비전	4
2. 추진전략	5
제2장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의 수립	7
I. 노인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	7
1. 국민연금 제도 확충	8
2. 경로연금 내실화	10
3. 노인 창업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확대 운영 ...	12
II. 노인의 건강보장	15
1. 장기요양 시설보호서비스 확대	16
2.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	20
3. 지역사회내 공공·민간부문 간 연계체계 구축	24
4. 노인의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28
5. 간병전문인력 제도화	31

6.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위한 재활전문인력 확대	35
7. 건강검진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37
8. 치매관리 및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39
9. 노인요양보험 등 공적노인요양 보호체계 구축	43
Ⅲ. 노인교육 및 문화여가기회 확대	46
1. 노인복지회관 운영 내실화	47
2. 경로당 운영 활성화	49
3. 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관한 정보확산	50
Ⅳ. 실버산업 활성화	52
1. 노인복지용품의 법적근거 마련	53
2. 민간 노인요양병원 설립지원	55
3. 노인복지용품의 세제감면 대상 확대	56
4. 실버산업 관련 정보 확산	57
Ⅴ. 정책 추진체계 구축	60
1. 노인복지 행정조직 기능강화 및 연계체계 구축	61
2.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63

제 1 장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¹⁾』수립배경 및 비전

1.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수립 배경

1. 노인인구 변화추세

□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이미 진입

-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세계적으로 빠른 수준으로 향후 보건·의료, 복지 등의 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고령사회 진입 소요연수 : 일본(24년), 미국(71년), 프랑스(115년), 한국(19년 예상)

1) 본 종합대책은 금년 7월 15일 총리실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관·선우덕·정경희·석재은·이윤경 연구원 및 보건복지부 박경호·김정석 과장, 신승일·정영훈·이태근 사무관이 보건복지부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변재관 박사가 대표발제함을 밝힌다. 또한 이 작업에는 최성재 서울대학교 교수, 김동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조성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정호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박상철 서울대학교 교수, 송미순 서울대학교 교수, 문옥륜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윤현숙 한림대학교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음을 명기하며, 자문위원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 노인부양 부담 증가

- 2002년 현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1.1%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 2019년에는 19.8%로 증가,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2. 노인의 생활실태

□ 낮은 소득수준 및 경제활동 기회의 제한

- 전체국민의 3.2%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반면, 노인의 경우 10.1%로 빈곤층 비율이 높음
- 노인인구 29%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 대부분이 농·어·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위임직원(2%)이나 전문가(1.9%) 등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높은 직종 종사자는 극소수

□ 노인건강 상태 저조 및 의료비용 증가

-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
 - ※ 전체 노인인구 중 86.7%가 장기간 치료·요양을 요하는 당뇨·관절염·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
 - ※ 유병율은 여성 25.6%, 남성 19.1%로 여성이 노년기에 질병을 가질 확률이 높음
 - 정신건강상의 장애(치매 등)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도 증가하는 추세

※ 65세 이상 치매노인추이(출현율) : '00년(7.6%)→'05년(8.3%)→'10년(8.6%)→'15년(9.0%)→'20년(9.0%)

○ '95년~'00년간 전체 건강보험에서의 진료비는 연평균 16% 증가한 반면,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24.8% 증가하여 노인의료비 부담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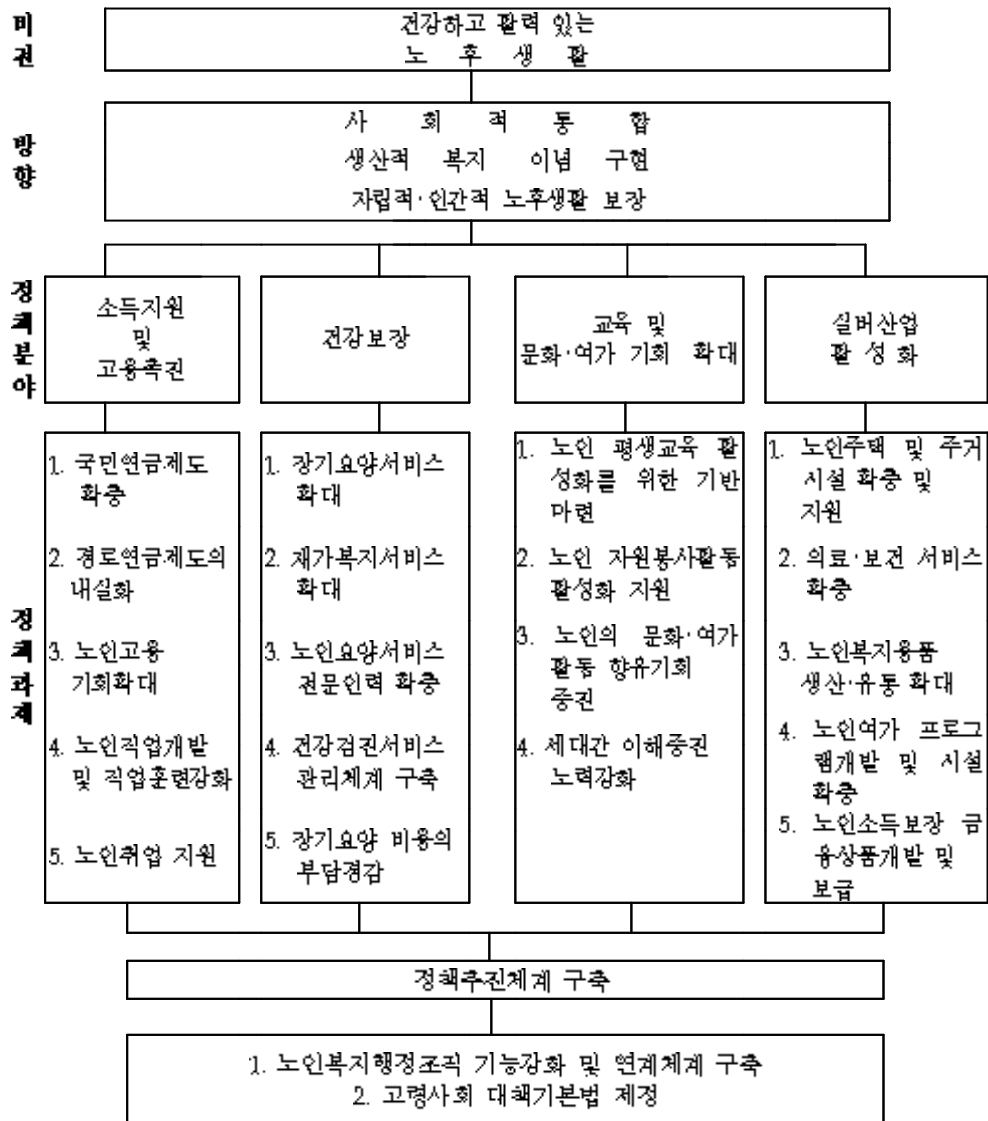
□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기능 약화

○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

※ 3세대 이상 가구는 '00년 현재 30.8%로 '95년에 비해 8.9% 감소하였으나 노인 1인 가구는 16.2%로 2.9% 증가

II. 노인보건복지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1. 노인보건복지정책 비전



2. 추진전략

- 생산적 복지이념 구현을 위한 노인대책 추진
 -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식하여 노년기에도 생산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고령화 대책 추진
 - 노인근로능력 향상과 근로능력 있는 노인을 위한 창업기회 확대, 취업알선, 자원봉사 활성화 등 적극적인 자활지원 추진
-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보편적 복지체계 구축
 -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부양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전체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
 - 저소득층, 저학력,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위한 생활안정·건강보장 및 중산층 이상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적 대책 추진
 -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 강구
 - 지식정보사회 진전에 대응하여 노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교육기회 확대
- 민간과 국가가 협조하여 노인종합대책을 합리적으로 분담 추진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의료·주거·교육보장 등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의 공적제도를 내실화하고,

- 중산층이상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은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실버산업 활성화 추진

- 민간의 자발적 참여여건을 조성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제고

□ 효율적인 노인대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 노인들이 공적 부양체계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역량 강화 및 전달체계 확립

- 노인복지대책추진위원회 체계 정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체계 구축

- 정책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하여 단계적·효율적으로 추진

제 2 장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의 수립

1. 노인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

- 국민연금 제도 확충
 - －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관심사항은 재정안정을 통한 연금제도의 유지가능성임
 - － 이를 위해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납부예외자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2003년부터 매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계산을 통해 보험료 및 급여수준의 조정 등을 포함하는 국민연금발전방안 및 장기재정안정화계획을 수립
- 경로연금 내실화
 - － 공적 소득보장의 보완제도로 유지·발전
 - － 소득 및 재산기준 설정과 조사실시를 기초생활보장과 연계하며 급여수준의 단계적 단일화 방안 모색
- 노인 창업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확대 운영
 - － 2003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 총 50개소 규모로 연차적 확대설치
 - － 효율적인 사업모델 선정
 - －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
-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운영

1. 국민연금 제도 확충

□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고령자 근로유인 확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제도 확충 및 저소득층 소득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필요

○ 실천과제

- 노인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미납자를 최소화하여 연금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
-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가중 및 근로의욕 저하 등 복지국가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고령사회의 노동인구 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여 노동력이 오래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의 연금재정 균형화 추진

□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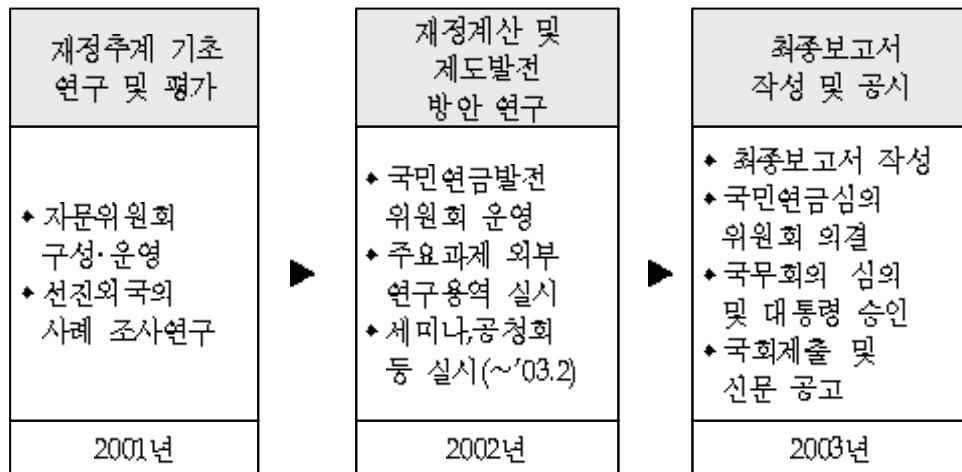
-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관심사항은 재정안정을 통한 연금제도의 유지가능성임
-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통해 연금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갈

- 이를 위해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납부예외자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2003년부터 매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계산을 통해 보험료 및 급여수준의 조정 등을 포함하는 국민연금발전방안 및 장기재정안정화계획을 수립

□ 사업추진체계

- 재정계산제도 도입



- '02. 3. 19. 『국민연금발전위원회』 발족(위원장 : 송병락)
- 2개의 하부 위원회(제도발전 및 재정분석전문위원회) 설치
 - 제도발전전문위원회는 재정안정화 방안, 현행제도 내실화 방안, 급여합리화 방안 마련
 - 재정분석전문위원회는 재정추계 모형 및 각종 변수 확정, 재정추계 실시

□ 추진일정

< 2002년 >

- 4월~11월: 전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발전방안 및 장기재정안정 계획(초안) 작성
- 12월: 국민연금 발전방안 및 장기재정 안정계획(초안) 심의·확정

< 2003년 >

- 1~3월: 국민연금 발전방안 및 장기재정 안정계획(초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세미나, 공청회 등)
- 3월: 국민연금 발전방안 및 장기재정 안정계획 확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10월: 국회제출 및 신문공시

2. 경로연금 내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소득보장 미흡
 - 전국민연금시대 이후에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율 및 체납율 증가로 연금사각지대 상존 우려
 - ※ '02.6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율 43.2%, 체납율 25.7%
- 급여수준 상이
 - 기초수급자(4.5~5만)와 차상위계층(3.5만)간 급여수준이 차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 미흡

- 수급자 선정 애로
 -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과 상이함에 따라 일선에서 수급자 선정에 애로
 - 일선 사회복지 담당직원은 현실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관리 업무에 집중

□ 대책

- 노후 공적소득보장체계의 보완 제도로 지속
- 공적연금 미수급자 우선의 65세 이상 모든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 보조
 - 현행 차상위계층 연령대를 69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 차상위계층보다 소득 및 재산수준이 낮은 기초수급자는 당연 대상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기초생활보장과 연계 실시하며 급여수준의 단계적 단일화

□ 추진일정

- 2002년
 - 각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 2003년
 - 법령개정 및 시행시기는 예산 범위내 조정

□ 재정소요

- 2003년
 - 차상위계층 69→65세 이상 확대 추가소요 예상

- 65~69세 대상인구(1,598,642명) 중
→ 11%(175,818명) 추가수급자 증가

□ 법령개정

- 노인복지법령 개정
 - 노인복지법 제9조(경로연금 지급대상)
 - 동법시행령제15조(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 유관협조기관 : 기획예산처

3. 노인 창업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확대 운영

□ 현 황

-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은 노인들의 경제·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자활후견기관 사업형태로 시범사업 운영
 - 노인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업종 및 봉사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을 가진 노인을 수요처와 연결시키는 역할 수행
 - 참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의 퇴직자로서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과 일반노인들도 참여
- ※ 5개소 시범사업에 2,463명/연 참여, '02년중 20개소로 확대 예정

□ 문제점

- 법적근거 미비 및 인프라 부족
 - 노인을 위한 일거리 제공과 창업지원 등 경제·사회적 참여지원 기

구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CSC의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후견기관은 '00. 10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를 계기로 정책적으로 확대되어 '02년말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 예정

〈자활후견기관(자활지원센터) 확대 경과〉

'97	'99	'00.10	'02.8	'03(안)
10개소	20개소	70개소	175개소	242개소

○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부족

- 노인들이 틈새시장 활동을 통한 소득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경험을 활용하고, 한국적 실정에 적합한 사회참여 및 고용 등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실천과제

○ 시범사업 종료후 연차적 확대설치

- 대도시형(간이판매업, 용역서비스업 등), 중소도시형(공부방운영 등), 농어촌형(유기농작물 재배·판매, 특산품 제조·판매업 등)으로 구분 연차적으로 확대설치(시·도별 3~4개소씩 총 50개소 규모 설치 추진)

〈CSC의 년차적 확대설치〉

(단위: 개소)

'02	'03	'04	'05	'06	'07
20	20(-)	30(+10)	50(+20)	50(-)	50(-)

○ 효율적인 사업모델 선정

- 사업초기 시범사업 기간을 적극 활용,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 법적근거 마련 등

- 시범사업 운영상황을 중간 점검한 후 법적 근거 마련하고, 인센티브제와 같은 차등화된 지원체계 도입 추진

□ 추진일정

○ '02년 추진과제

- 『CSC 안정적 발전방안』 연구 용역 완료(10월)
- CSC 운영지침 제정(12월)
- 신규기관 추가선정 및 직원교육(11월)

○ '03년 추진과제

- CSC 중간평가(4월)
- CSC 사업확대 여부 결정 및 예산요구(5월)
- 사업직종 개발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7월)

○ '04년 이후 추진과제

- CSC 법적 근거 마련(노인복지법 개정, '04년중)

II. 노인의 건강보장

- 장기요양 시설보호서비스 확대
 - 치매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수 및 현재의 시설 수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단계적으로 확충
-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
 - 주간보호(Day Care)시설, 단기보호(Short-Stay Care)시설, 가정봉사원파견 시설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 지역사회내 공공·민간부문 간 연계체계 구축
 - 노인재가복지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정·지역사회·민간부문 간 상호 유기적 협조 체계 하에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요양시설과 지역사회 보건복지시설, 의료기관간 보호가 연계되고, 연속적(continuum of care)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이송체계 구축 및 인력수준 제고
- 전문인력의 양성
 -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 및 노인전문간호사 제도 도입
 - 간병전문인력 제도화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위한 재활전문인력 확대
- 건강검진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에 대한 검진수가 현실화 및 무료검진 대상인원의 단계적 확대
- 치매관리 및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 각 시·도별 치매전문요양병원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지원 및 보건소 「치매상담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노인보건센터」로 전환·운영
- 노인요양보험 등 공적노인요양 보호체계 구축
 -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실행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시행

1. 장기요양 시설보호서비스 확대

□ 개 요

○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치매·정신장애 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
- 이 중에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2002년 현재 7만4천여 명으로 추정됨

〈표〉 시설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2002)

(단위: 명)

장애상태	보호종류 수발상태	재가·지역사회보호			시설보호	합계
		심한 수발장애	중간적 수발장애	경미한 수발장애		
최중중	0	2,716	18,671	21,387	44,087	65,474
중중	10,373	13,994	73,328	97,695	30,277	127,972
경중	30,553	54,317	102,976	187,846	0	187,846
치매	13,579	1,509	170,872	185,960	0	185,960
허약	9,053	3,018	208,969	221,040	0	221,040
전계	63,558	75,554	574,816	713,928	74,364	788,292

- 그러나 필요 노인수에 비하여 시설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
- 총 시설입소정원(요양병원 제외)은 2001년말 현재 16,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0.42% 수준
- 시설보호대상 노인을 모두 시설로 입소 보호하는 경우, 시설보호 노인비율은 65세이상 노인의 2% 수준임.

※ 주요 선진국의 시설보호노인비율(1990년대)

	호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65세 이상대비	6.8%	6.0%	6.2%	6.5%	6.8%	5.1%

※ 양로시설 등 주거시설 포함

-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 수는 2002년 현재 요양시설 708개소, 전문요양시설 354개소, 요양병원 118개소이나 현재 총 시설 수는 195개(요양병원 포함)에 불과

〈표〉 장기요양시설서비스의 필요시설 추계(2002)

(단위: 개소)

구 분	시 설	
	필요시설 (2002)	현재시설 (2001.12월)
합계	1,180	195
요양시설	708	120
전문요양시설	354	57
요양병원(70인 병상기준)	118	18 (시·도립만)

○ 추진방향

- 치매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수 및 현재의 시설 수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단계적으로 확충
- 정부 지원시설의 확충과 함께 민간에 의한 시설 활성화 유도

□ 세부추진계획

○ 공공 치매요양병원 확충

(단위: 개소)

연 도 별	'02	'03	'04	'05	'06	'07	'11
합 계	28	35	42	49	55	61	90
시·도립치매요양병원	23	28	33	38	42	46	67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5	7	9	11	13	15	23

○ 저소득 계층을 위한 무료 노인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 확충

(단위: 개소)

연 도 별	'02	'03	'04	'05	'06	'07	'11
합 계	227	302	406	528	660	810	1,432
○ 정부지원	213	282	356	428	500	575	942
- 요양 (실비포함)	128	166	200	245	280	320	488
- 전문요양	85	116	156	183	220	255	454
○ 유료시설	14	20	50	100	160	235	550

- 양로시설에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을 보장하여 요양시설로 전환
 - 2002년 3 개소, 2003년 3 개소

○ 중산층·서민을 위한 실비 요양보호 확대

- 실비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 2002년 24개소 → 2003년 52개소(28개소 신축)
- 실비시설 지원방법 개선
 - 시설별 정액지원제(년24백만원)에서 입소인원에 따른 지원제도로

- 전환(입소자 본인 부담금 하향 조정)
 - 실비입소자의 자격 기준 완화
 - 월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로 한정
 - 무료 요양·전문요양시설의 실비대상 노인 시설입소비를 상향조정 (20% → 30%)
 - ※ 실비노인요양시설에도 무료대상노인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 (30%)
 - 노인 실비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활용방안 연구 실시
- 시설운영기준 완화로 민간에 의한 노인 요양보호 활성화 유도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완화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자격취득 5년경과 의료인 → 의료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설비·인력배치 기준 완화
 - 시설의 규모, 입소정원에 따라 시설 설비 및 인력배치기준 완화
 - 무료·실비시설의 정원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
 - 유료시설의 입소정원 폐지

<중장기 계획>

- 요양비용의 차등징수제 도입
 - 소득파악율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무료·실비시설의 구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요양비를 차등 징수하는 sliding scale fee system 도입

□ 추진일정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 지대요양병원신축			
· 시·도립	-----	-----	-----
· 군 지역	-----	-----	-----
- 무료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 전문요양시설 신축	-----	-----	-----
· 노인요양시설 신축	-----	-----	-----
· 양로시설 기능전환	-----	-----	-----
- 실비보호 확대			
· 실비요양시설 신축	-----	-----	-----
· 실비시설지원방법개선	-----	-----	-----
· 실비입소자 자격기준 완화	-----	-----	-----
· 무료시설 실비입소 확대	-----	-----	-----
· sliding scale fee system 도입	-----	-----	-----
· 노인 실비보호를 위한 지역 사회 자원활용방안 연구	-----	-----	-----
- 연간에 의한 요양보호 활성화			
· 시설장 자격기준 완화	-----	-----	-----
· 시설설비·인력배치 기준완화	-----	-----	-----

□ 법령개정여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2.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

□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장기요양대상 노인중에서 복지욕구에 따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표 「시설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 참조)
- 2002년 현재 장기요양대상노인 중에서 재가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

는 노인이 전체적으로 71만4천명으로 추정. 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및 허약노인을 제외하면 30만5천명 수준으로 추정

- 그러나 이들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시설은 필요 노인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총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수는 2001년말 현재 16,663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0.4% 수준
- 경증 및 허약노인을 제외한 재가보호대상 노인(30만5천명)을 모두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이용노인비율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 수준

※ 주요 선진국의 재가보호노인비율(1990년대)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독일	미국
65세 이상 대비	11.7%	24%	17%	20.3%	9.6%	16%

- 이를 위해 필요한 재가복지시설은 2002년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시설 4,012개소, 주간보호시설 3,697개소, 단기보호시설 1,563개소이나, 현재 총 재가복지시설수는 322개소에 불과

〈표〉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시설 추계(2002)

(단위: 개소)

구 분	시 설	
	필요시설 (2002)	현재시설 (2001.12월)
합계	9,272	322
가정봉사원파견센터	4,012	143
주간보호시설	3,697	142
단기보호시설	1,563	37

○ 추진방향

- 주간보호(Day Care)시설, 단기보호(Short-Stay Care)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지원
- 가족동거 여부 및 주간·야간 등 시간대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차별화
- 민간에 의한 시설활성화 및 중산·서민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 노인의 가정·지역사회 거주 욕구를 충족하고 시설에의 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향상

□ 세부추진계획

○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단위: 개소)

연 도 별	'02	'03	'04	'05	'06	'07	'11
합 계	322	406	691	1,138	2,113	4,098	14,172
○ 정부지원시설(무료,실비)	226	256	421	548	823	1,268	5,678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00	111	167	217	326	522	2,363
- 주간보호시설	100	115	215	280	420	630	2,727
- 단기보호시설	26	30	39	51	77	116	588
○ 유료시설	96	150	270	590	1,290	2,830	8,494

-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의 시설과 인력 자원 활용 재가시설 부설운영 유도
 - 보건(지)소, 요양병원,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 종교시설 등 활용
- ※ 지역사회 자원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

- 중산·서민층의 실비보호 확대
 - 실비입소자의 자격 기준 완화
 - 월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로 한정
- 민간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유도
 - 시설장 자격기준 완화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 의료인
 - 시설 설비 기준 완화
 - 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사용권”으로 완화
- 재가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 가정 및 재가복지시설간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특수차량을 확보
 - 재가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로 전문성 제고
 - social service에 health service 보장
 - 이용대상 노인의 특성(치매노인, 뇌졸중 노인, 경증 노인 등)에 따라 시설 유형 및 운영 차별화

□ 추진일정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지역사회에 기존 시설 활용			
- 차량 등 장비보강			
- 종사자 교육 강화			
- health service 보강			
- 노인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 전문화			
- 민간에 의한 시설 활성화 유도			

□ 법령개정여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3. 지역사회내 공공·민간부문 간 연계체계 구축

□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를 보면, 가족수발이 50.9%, 비가족수발이 23.1%, 비수발이 26%로 수발자의 간병부담 가중
 -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요건에 따른 적정 서비스 제공체계 미흡

〈표〉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2001)

(단위: %)

대상노인의 특성	가족수발	비가족수발	비수발	전계
전계	50.9	23.1	26.0	100.0
남자	67.1	14.9	18.0	100.0
여자	46.3	25.5	28.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2001.12

○ 추진방향

- 노인재가복지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정·지역사회·민간부
문 간 상호 유기적 협조 체계 하에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개별적으로 사정하여, 개인별로 필
요한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
- 요양시설과 지역사회보건복지시설, 의료기관간 보호가 연계되고
연속적(Continuum of Care)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이송체계 구축
및 인력 수준 제고

□ 세부추진계획

- 장기요양 노인의 가족·친지 등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장기요양노인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및 노인 간병비 지급
 -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비의 소득공제제 도입
 - 노인 부양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민간부문과 자원봉사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노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사정, 이에 따른 서비스제공 시스템 구축
 -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칭 「노인일상생활수행
정도분류기준표」 마련
 - 노인이 서비스를 원할 경우 위 기준표에 의거 사정
 - 사정을 위한 인력 및 절차에 관한 기준 마련
 - 사정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
 - 우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전문요양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시범 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

- 노인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적(Continuum of Care)제공체계 확립
 - 요양보호 서비스가 중단·차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공
 - 노인의 중증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중증, 경중 관리 및 생활서비스)
 -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의 포괄적인 제공
 - 요양보호시설간의 서비스 제공의 기술적 수준 연계
 - 병·의원에서 노인 환자를 요양시설에 이송 시 기술력의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시설의 의료인력 보강 및 기술훈련과정 강화
 - 노인전문간호사 배치
 - 전문훈련과정 개발 시행
 - 의료기관의 노인환자 의뢰서 구체화
 - 요양보호시설간의 서비스 등급화(계층화)
 - 병원, 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 지역사회시설(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의 서비스 차별화 및 등급화
 -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
 - 병·의원 등에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 설치
 - 보건소 등 보건기관이 중증 치매, 중풍노인 대상의 주간보호시설 설치
 - 재가 및 지역사회노인에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의 다양화
 - 기존의 사회적 서비스(가사지원, 말벗, 개인활동지원, 간병서비스)에 부가하여 보건·의료서비스(간호, 간호보조, 물리/언어/작업요법 등)를 요양대상 노인에게 제공
 - 재가 장기요양 노인대상의 방문영양지도 실시
 - 중증 장애노인부터 보건소에서 방문영양지도 실시

- 재가 장기요양 노인대상 가정(방문)간호서비스의 확대
 - 모든 보건(지)소에 실질적인 가정(방문)간호사업 실시
 - 점차적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가정(방문)간호팀 구성 유도

<중장기 계획>

- 자치단체의 노인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관리(Quality Control)를 위한 정기 점검시스템(Quality System) 구축
 -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대한 정기 평가 및 환류시스템 도입
- 남녀근로자에 대해 노인부양지원 차원에서 탄력근무제, 가족간호휴가제 등 권장확대
- 병·의원 부설 또는 민간(개인)운영에 의한 노인가정간호센터의 도입 검토
 -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장기요양대상노인을 위한 민간 가정간호센터의 도입 및 활성화 지원

□ 추진일정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 유기적협조체계를 위한 지원확대 · 장기요양노인가정 세제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비 소득공제 · 노인간병비 지급 · 부양자 지원서비스 프로그램개발·보급 · 근로자 단려근무제, 간병휴가제 권장 · 자원봉사서비스 확대 · 자치단체시설 평가·환류시스템 시행			
- 노인욕구에 따른 서비스제공 시스템 · 노인일상생활수행정도분류기준표 마련 · 서비스 사정인력 및 절차 기준마련 · 시범사업 실시 · 시스템 구축			
- 연속적 서비스 제공체계 · 요양시설 인력보강 및 기술훈련 강화 · 노인전문간호사 제도마련 및 양성배치 · 의료기관의 노인환자 의뢰 기준 마련 · 요양보호시설 기능 평가 및 보완 · 의료기관에 단기보호시설 설치 · 보건소에 주간보호시설 설치 · 재가복지시설에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보강 · 가정(방문)간호서비스의 활성화 · 노인 방문영양지도 실시 · 민간(개인)운영의 노인가정간호센터도입검토			

□ 법령개정여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4. 노인의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개 요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환자에 대한 치료는 복합적인 질환에 따른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이나, 현행 노인의료 관련 전문인력(노인의학전문의, 노인전문간호사 등)양성제도는 없음

- 현재 대한노인병학회, 임상노인병학회 등에서 노인병 인정의 연수과정이 있으나 임상수련시설의 부족 및 단순교육 등 전문성 요구에 미흡
- 노인전문간호사 제도는 응급·감염관리·산업전문간호사 및 임상·호스피스·보협심사전문간호사와 함께 제도화 검토 중

※ 주요 국가의 노인병전문의 제도

- 일본: 내과학 및 외과학의 분과인정의
- 미국: 내과학 및 가정의학의 분과전문의
- 노르웨이, 싱가포르 : 내과학의 분과전문의
- 영연방국가(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노년학과 전문의로 양성

※ 주요 국가의 노인전문간호사 제도

- 미국 :
 - 임상전문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 6종 중 노인전문간호사 제도 시행
 - 실무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6종 중 노인전문간호사 제도 시행
- 캐나다 : 8종의 전문간호사 중 노인전문간호사 제도 시행
- 일본 : 미 시행

○ 추진방향

- 노인질환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치료계획의 수립, 노인 재가 및 시설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 도입
-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전문간호사 제도 도입

□ 세부추진계획

○ 노인의학전문의 제도 도입

- 의사협회, 병원협회 기타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논의
 -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등에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 노인 의학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기준 마련

○ 노인전문간호사제도 도입

- 교육, 실무경력, 시험 등을 거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만성질환 위주의 노인건강문제에 대한 전문성 담보
-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 조속히 도입
- 노인전문병원, 치매요양병원, 요양원 및 지역사회 영역에서 노인간호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 추진일정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 노인의학전문의제도 도입			
- 노인전문간호사제도 도입			

□ 법령개정여부

- '02년내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5. 간병전문인력 제도화

□ 개 요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간병과 관련된 분야의 인력으로 생활보조원, 가정봉사원, 가정도우미, 간병인 등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함
- 이에 따라 간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고 노인의 생활기능 유지·회복에 한계
 - ※ 가정봉사원중에는 무급(자원봉사자) 5,663명(2001년), 유급 455명이 활동중
 - ※ 영국에는 Care Staff 나 Home Carer에 대한 직업훈련자격제도(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가 있으며 노인전문 간호사, 상담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 ※ 생활보조원은 노인복지법상으로 요양시설 입소노인 10인당 1인, 전문(치매)요양시설 5인당 1인꼴로 활동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일상생활(ADL, IADL)동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간병전문인력이 약 97천명(2002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표〉 간병전문인력의 필요수 추정 (2002년 기준)

구분	보호형태		최 중 중 장애노인	중 중 장애노인	경 중 장애노인	치매노인
주당 간병 보호 시간 ¹⁾	재 가 보 호	심한 수발 장애	21시간 (-)	21시간 (10,373명)	6시간 (30,553명)	6시간 (13,579명)
		중간 수발 장애	15시간 (2,716명)	12시간 (13,994명)	3시간 (54,317명)	3시간 (1,509명)
		경미한 수발 장애	9시간 (18,671명)	6시간 (73,328명)	3시간 (102,976명)	3시간 (170,872명)
		시설보호	44,087명	30,277명	-	-
	필요한 간병전문 인력(명)	재가보호	7,539	29,818	23,660	21,617
	시설보호	8,817	6,055	-	-	
	합계	16,356	35,873	23,660	21,617	

주: ()내는 해당 추정노인수임.

-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2001)에 의하면 간병서비스는 간병지원의 가정봉사원서비스로 표기되어 있음.
- 2) 전문인력산정식은 재가보호의 경우, [(해당노인수×연간이용시간)/(6시간/일×20일/월×12월/년)]이고, 시설보호의 경우는 [해당노인수/전문인력1인당 담당노인수(5인)]로 함.

○ 추진방향

- 노인복지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양성기관의 기능 강화 및 간병인력 양성 일원화

□ 세부추진계획

○ 가정봉사원 양성기관의 기능확대

- 가정봉사원 뿐만 아니라 간병인, 복지간병인, 가정도우미·간호조무사 등에 대해 전문적인 간병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신설·운영
- 신체적 간병수발 및 가사지원 전문직종의 교육과정 마련: 안 별첨

- 시·도별로 양성기관운영 및 자격부여(수료증)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자격자 배치
 - ※ 공익근무요원을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행 사회복지시설 이외에 재가복지시설의 근무인력을 확대

추진일정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 가정봉사원양성기관 기능 확대 · 노인복지법상 근거 마련 · 교육과정 신설 및 교과과정 마련		_____	
- 양성기관운영 및 자격부여		_____	_____
-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배치			_____

법령개정여부

- 「노인복지법령」 개정

【붙임】

〈표〉 신체적 간병수발 및 가사지원 전문직종의 교육내용(안)

구분	교육과목명	교육시간	주요 교육내용
교육강습		(54)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3	사회복지의 개념, 실천방법, 복지정책(제도)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	4	시설복지론, 재가복지론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4	시설복지론, 재가복지론
	신체간병수발에 대한 이해	15	ADL 지원방법론
	가사지원에 대한 이해	4	IADL 지원방법론
	가정간호에 대한 이해	4	노인간호, 응급처치 및 호스피스간호 내용
	재활훈련에 대한 이해	3	물리 및 작업치료 훈련내용
	노인 및 장애인의 질병, 장애에 대한 이해	4	기초의학내용, 의료도구내용
	노인 및 장애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	4	노인 및 가족의 심리상태
	간병전문인으로써의 자세 이해	3	신체간병수발 및 가사지원 전문직 종사자의 자세
	재가요양계획수립에 대한 이해	4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계획 작성론
	보건복지서비스연계에 대한 이해	2	서비스연계론
실기강습		(52)	
	간병수발실시 자세 동작 훈련	4	기본자세 숙달, 도구사용 훈련
	신체간병수발기술	36	ADL 관련 신체간병수발방법
	사례검토	6	보건복지서비스연계, 간병사례 검토
	재가요양계획 수립	6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계획 수립
현장실습		(30)	
	장기요양시설 실습	18	요양·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재가요양시설 실습	12	주·단기보호시설, 가정
합계		136	

6.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위한 재활전문인력 확대

□ 개 요

○ 현황 및 문제점

-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증가
 -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은 74만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중증 및 최중증노인은 17만6천명으로 추정
- 재활전문인력(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현황
 - 물리치료사(PT)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별 1명씩 배치(입소인원 100인 초과시 1인 추가 배치)
 - 작업치료사(OT) : 미배치(노인복지법상 배치의무 미규정)
※ 보건소 : 242개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배치, 작업치료사 미배치
※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에 의거 보건소에 물리치료사(1인)를 배치토록 함(보건지소는 관련 규정 없음)

○ 추진방향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물리치료사 확보를 위한 지속적 지원
- 작업치료사의 노인보건사업에 적극적인 활용 확대
- 보건(지)소의 공중보건물리치료 및 가정방문 물리치료 활성화

□ 세부추진계획

- 무료 및 실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속적 지원
 - 정원확대는 우선 필요시설 확충과 함께 단계적 검토
- 노인의료복지 시설내 물리치료실을 지역사회의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및 저소득노인에게 개방

- 보건(지)소의 노인 재활 기능 강화
 -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증원 및 작업치료사 배치방안 검토
 - 노인가정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 작업치료사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 요양·전문요양시설의 확충과 함께 작업치료사의 점진적 배치
- ※ 작업치료학과의 정원의 점진적인 확대로 인력활용 가능

구 분	정원계	2002		2001		2000		1999		1998	
		신설	중원	신설	중원	신설	중원	신설	중원	신설	중원
작업치료학과	1000	420	5	120	15	160		200		80	

□ 추진일정

	2002	2003	2004년이후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물리치료사 확보 지원(운영비 지원)			
- 보건(지)소의 노인재활 기능강화			
- 작업치료사의 노인보건사업 지원			

□ 법령개정여부

- 필요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및 「지역보건법시행규칙」 개정

7. 건강검진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 개 요

○ 사업현황

- 노인복지법에 의한 무료검진은 1983년부터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재가노인에 대하여 정부예산 지원하에 실시되고 있으나, 희망자(3만명 한도, 단, 전년도 건강한 자는 제외)에 한하여 실시함 (노인복지법 제27조).

※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무료 암검진 실시

〈표〉 2002년도 재가노인 진단인원 및 예산액

진단인원 (명)			진단수가 (원)	
계	1차검진	2차검진	1차검진	2차검진
30,000	27,000	3,000	13,360	15,346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일반소득계층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

※ 2002년도부터 소득계층 하위 20%에 해당하는 99만명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 무료 암검진 실시

○ 문제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무료검진인원(3만명)은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노인(2001. 8월말기준: 346,000명)의 8.7%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영양조사(1998년)에 의

하면 건강검진 수진율이 65세 이상은 37.7%로 나타나, 45~4세의 56.2%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추진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노인에 대한 검진수가 현실화
- 무료검진 대상인원(현행 3만명)의 단계적 확대
- 노인 건강검진의 내실화 및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세부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노인에 대한 검진수가 현실화
 - 2003년도부터 검진수를 상향조정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검진수와 일치

〈건강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검진 수가(현행)〉

(단위: 원)

구분	기초생활	건강보험	
		직장	지역
1차	13,360	24,570(28,530)	28,840(33,790)
2차(예산서 기준)	15,346	23,700	23,700

* () 여자

- 건강검진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 기초수급대상 건강검진 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노년기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검진을 강화(검진항목 조정)

- 검진기관과 치료기관과의 연계로 재검사 등으로 인한 노인의료비 지출의 절감 및 협력체계 구축

〈중장기 계획〉

- 국민건강증진기금내에 「노인건강검진 지원금」을 마련하여 노인 건강검진의 안정적 지원 및 체계화 도모
 - 현행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의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2007) 이후부터 추진
 - ※ 일본은 40세 이상자에 대한 건강검진비용은 노인보건제도의 재정에서 부담

□ 추진일정

	2002	2003	2004년이후
- 검진수가 현실화 및 검진항목 조정, 대상확대 등			
- 국민건강증진기금내에 「노인건강검진 지원금」 마련			2007년 이후
- 검진기관과 치료기관의 연계			

8. 치매관리 및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 개 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치매노인에 대한 공적관리는 보건소내 치매상담센터에 신고하거나, 치매 전문요양시설 또는 치매요양병원에 입소시켜 보호하

고 있는 실정이나

- 치매 질환 발병후 사후관리에 그치고 있어 사전적인 예방 대책이 미흡
- 치매 전문요양병원 및 전문요양시설이 부족
- 또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여 병·의원과 시설 등과의 지역의료 협력체계 미흡

○ 추진방향

- 각 시·도별 치매 전문요양병원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및 저소득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검진(mass screening)을 실시
- 군단위 농촌지역소재 보건소부터 전국의 「치매상담신고센터」의 기능을 보장하여 「노인보건센터」로 전환·운영
- 병의원에서의 건강검진 수진결과, 질병의심노인에 대해 보건소에서 건강교육 및 영양교육 실시

□ 세부추진계획

- 각 시·도별 치매 전문요양병원 및 전문요양시설 확충
 - 시·도립 및 군지역 치매요양병원과 노인 전문요양시설의 지속적 건립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및 저소득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치매 검진(mass screening)을 실시
 - MMSE-K 판정표에 의한 일차적 진단 실시
 - 치매판정·입소(입원)·치료시 전문가에 의한 판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관리 강화
 - 지역사회거주노인에 대한 치매상담, 뇌졸중의 조기발견 및 집중관리, 치매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지도
 -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치매노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서비스 제공
 - '02년도(32→48), '03년도(48→96개소), '04년도(96→242개소)
 - 치매검진 수진자의 단계적 확대 및 교육 실시 등 관리 확대
 -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 간병요령 등 교육 실시, 상담 및 지원
 - ※ 치매상담센터 등록 노인 : 10,401명(2001년말 현재)
 - 2003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노인을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실시
 - 2004년도까지 등록대상 노인에 대한 치매검진 및 관리체계 확립
- 치매상담센터를 「노인보건센터」로 개편,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 강화
 - 건강검진 수진결과, 질병의심노인에 대해 보건소에서 치료, 건강교육 및 영양교육 실시
 - 기초생활 수급대상노인 및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에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 병원원과 연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지역사회 거주노인의 일상생활수행기능 판정 건강검진 실시 및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제공
 - 2003년부터 「노인보건센터」 확대 개편을 추진
 - 2003년 모형개발
 - 일차적으로 농어촌 군단위 지역부터 1년간 시범사업후 확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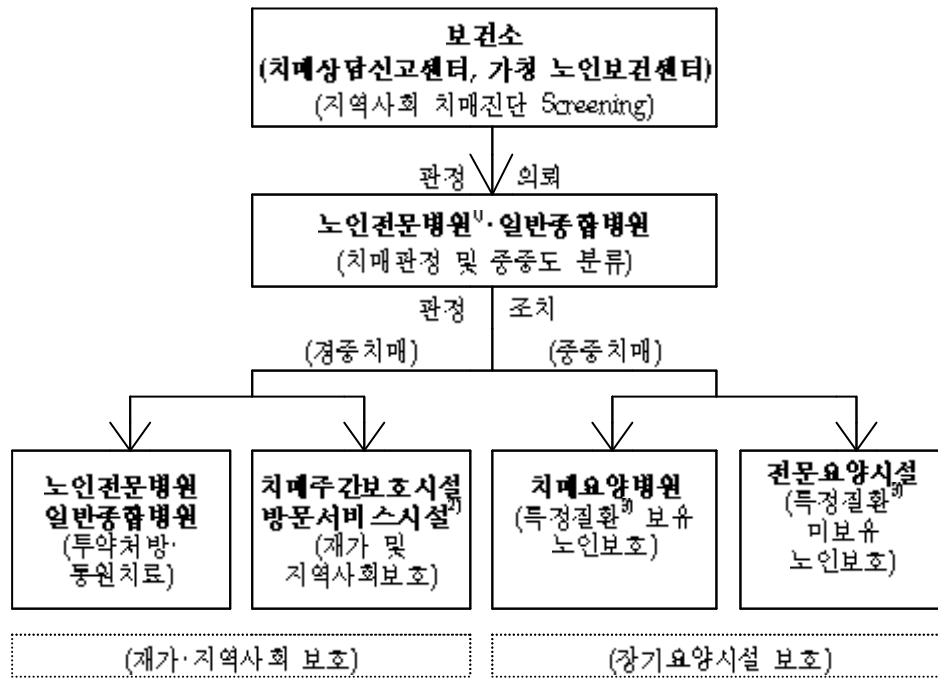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군단위 센터	(모형개발)	(시범사업)	10개소	40개소 (평가후 모형확정)	전체
시단위 센터	-	-	-	(시범사업)	20개소

※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보건지소에 「노인보건센터분소」를 설치·운영

□ 추진일정

구 분	2002	2003	2004년 이후
- 치매상담센터 운영활성화	_____	_____	_____
- 치매검진 확대	_____	_____	_____
- 치매관정·관리시스템 구축	_____	_____	_____
- 노인보건센터 개편	_____	_____	_____

〈지역사회내 치매노인의 시설간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 주 : 1) 노인전문병원은 치매노인에 대한 비입원시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① 외래 치매클리닉(Ambulatory Dementia Clinic), ② 노인기능사정과(Geriatric Assessment Unit), ③ 주간치매병동(Day Dementia Care Unit)을 설치·운영함.
 2) 방문서비스시설에는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의 기존 병원과 보건소 이외에 민간영리단체(항후)가 있고, 가사 및 간병수발 제공의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이 있음.
 3) 특정질환이란 당뇨병, 심장병 등과 같이 집중적인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말함.

9. 노인요양보험 등 공적노인요양 보호체계 구축

□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에 따른 질환노인의 증가 및 가정의 부양기능 약화 등으로

장기요양비용을 가정내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현상에 대비, 동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risk pooling)토록 하는 노인요양보험 등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 필요

○ 추진방향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전문인력 등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서비스 급여대상, 급여범위 및 종류, 자원조달방식 및 관리운영체계 등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실행모형 개발
-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후 국민적 합의하에 중장기적으로 시행(2007년 이후)

□ 세부추진계획

○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의 기본방향 설정

- 사회보험방식, 조세방식, 개인저축방식 등 장기요양보호의 기본운영체계 설정

○ 장기요양서비스 전문인력 및 재가·시설서비스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 실행모형 개발

- 공적 장기요양 대상노인의査定(assessment)기준
- 공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급여유형 및 급여범위
- 공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 및 인력
- 공적 노인 장기요양 자원조달 및 관리운영체계 등

○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 실행모형의 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시행

- 국민적 합의를 통한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 방안 확정
- 노인장기요양보호 관련 법령 제정 및 시행

□ 추진일정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기본방향 설정	-----					
- 실행모형 개발						
· 공적 장기요양 대상노인의 査定 (assessment)기준		-----				
· 공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급여유형 및 급여범위		-----				
· 공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 및 인력		-----				
· 공적 노인 장기요양 자원조달 및 관리운영체계 등		-----				
-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	-----		
- 시설 및 인력의 지속적 인 확충	-----					
- 노인장기요양보호 관련법령 제정					-----	-----
- 공적 노인요양보호체도의 단계적 시행						-----

Ⅲ. 노인교육 및 문화여가기회 확대

-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교육인적자원부)
- 노인문화 향유기회 확대(문화관광부)
- 저소득층을 위한 관광복지 프로그램 지원(문화관광부)
- 노인가족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유도(문화관광부)
- 노인복지회관 운영 내실화
 - 노인복지회관 유형별 표준모형 개발기능 재정립
 - 지역별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제공
 - 규모에 따른 기준 정립, 주요사업, 조직 및 직제 등 표준화
 - 노인복지회관 기능 재정립
 - 지역사회 노인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재정립
 - 사업 운영비 지원은 지역별 모형 및 기능재정립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
- 경로당 운영 활성화
 - 지역별 경로당 운영 표준모형 개발 및 운영메뉴얼 작성
 - 경로당과 지역사회복지지원간 연계·지원
 -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 보완추진
-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행정자치부)
- 대중매체등을 통한 노인 이해교육 강화(교육인적자원부)
- 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관한 정보확산
 - 노인관련 종합정보의 개발 및 체계화
 - 노인종합정보의 체계적 보급수단 확보
 - 노인 정보화교육의 지속적 추진

1. 노인복지회관 운영 내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1989년 2개소로 출발하여 현재 114개로 확대
 - 2000년 이후 매년 10개소 이상 신축중이서 노인복지회관이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역할 예견
 - ※ 미국 : 10,419개 노인복지회관(97년)은 초기의 여가프로그램과 영양서비스 제공기능에서 지역사회 모든 노인과 가족에게 포괄서비스 제공의 중심적 역할 수행기능으로 확대
 -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재로는 건강, 교육, 취업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수행
- 회관운영에서 지역별 규모 및 재정운영 편차가 크며,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없음
 - 사회복지관 : 국비 20%, 장애인복지관 : 국비 40%
 - ※ 전국 평균 직원수 : 11.5명 (전남 4.1, 경남 4.0, 제주 3.6,)
- 기능 미정립
 - 여가복지시설의 성격과 포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센터로서의 역할 요구간에 혼란
 - 중앙과 지방간에 명칭과 기능의 혼란

□ 대책

- 노인복지회관 유형별 표준모형 개발
 - 지역별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제공
 - 규모에 따른 기준 정립, 주요사업, 조직 및 직제 등 표준화

- 노인복지회관 기능 재정립
 - 지역사회 노인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재정립
 - 사업 운영비 지원은 지역별 모형 및 기능재정립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
- 추진일정
 - '02년 추진과제
 -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03년 추진과제
 - 노인복지회관 표준모형개발 및 기능재정립 방안 수립
 - '04년 이후 추진과제
 - 노인복지회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수립·집행
- 재정소요
 - 표준모형개발 및 기능재정립 방안 수행관련
 - 연구용역, 시범사업
 - 회관운영 지원비 : 기능재정립 상황에 따라 지원비율 등 결정
- 법령개정
 - 노인복지회관 기능 및 명칭 표준화
 - 운영비 지원근거 및 세부내용 규정
- 유관협조부처 : 기획예산처

2. 경로당 운영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1989년 설치 시작하여 2001년말 현재, 43,372개소 운영 중
 -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시설수 편차 큼(충북 1/43, 서울 1/226)
- 운영프로그램 미흡 및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 부족
 - 지역별 노인의 요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미흡('00년부터 약 25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 추진 중)

□ 대책

- 지역별 경로당 운영 표준모형 개발 및 운영메뉴얼 작성
- 경로당과 지역사회복지자원간 연계·지원
 -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 보완추진

□ 추진일정

- '03년 추진과제 :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결과 평가분석
- '04년 추진과제 : 유형별 경로당 운영 표준모형 개발
- '05년 이후 추진과제 : 경로당과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 및 지원

□ 재정소요

- 시범사업 추진결과 평가분석 및 표준모형 개발비
- 지역사회복지자원과 연계비용 검토

□ 법령개정 : 표준모형개발에 따른 법령개정

3. 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관한 정보확산

□ 현황 및 문제점

- 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유용한 종합적인 노인관련 정보 부족
- 정보접근이 용이한 체계적인 수단(On-line, Off-line) 미비
 - 사회복지 분야 중 정보화 정도가 낮음
 - ※ 장애인 복지 : 곰두리 사이트('94년), 여성복지 : 위민넷('01년)
 - 지식정보사회 도래로 세대간 디지털 격차 현상이 발생하여 현세대 노인의 정보·문화적 소외 가능성 높음

□ 대책

- 노인관련 종합정보의 개발 및 체계화
 - 노후준비 및 노년생활 유지에 필요한 정보의 연구개발
 - 지역 및 단체별로 분산 제공되는 정보의 체계화
- 노인종합정보의 체계적 보급수단 확보
 - 노인종합정보 안내서(Silver Book) 작성·보급
 - 노인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On-Line 정보제공
 - ※ 경기도 : 지역별 노인복지시설안내 책자 발간('01.9)
 - ※ 영국 : 노년기 준비 및 시간활용, 건강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Silver Book을 매년 발간
- 노인 정보화교육의 지속적 추진

□ 추진일정

- '03년 추진과제

- 노인관련 종합정보의 개발 및 체계화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04년 추진과제
 - Silver Book 작성·배포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작(2005년 완료)
- '05년 이후 추진과제
 - 정보의 갱신 및 시스템 유지보수
- 재정소요
 - 노인종합정보 개발 및 체계화 비용
 - Silver Book 발간·배포 비용
 - 노인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화촉진기금 활용예정
- 법령개정
 - 노인복지법에 노인정보화 관련 규정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활 및 노후준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노력
- 유관부처 협조
 -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IV. 실버산업 활성화

-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및 지원(건설교통부)
 - 복지수요의 개인화·고도화 자립의식 성숙 등의 추세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휴양형 주거단지(종합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에 대비,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장기적으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시범 추진
- 노인용 편의주택 공급확대 유도(건설교통부)
 -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모델 개발
 - 노인봉양 세대에 주택 우선 공급
- 노인복지용품의 법적근거 마련
 - 노인복지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
- 민간 노인요양병원 설립지원
 - 노인요양병원 등 민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재투자금을 통한 융자 등 지원 추진
- 노인복지용품 생산유통 확대(산업자원부)
 - 노인복지용품 수입대체 및 신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 노인복지용품 규격화 추진
 - 노인복지용품 유통 활성화 및 정보제공 체계화
- 노인복지용품의 세제감면 대상 확대(재정경제부)
 - 수입관세 감면대상 확대 추진
- 노인대상 자산관리상품보급 및 활성화(재경부 작성중)
- 실버산업 관련 정보 확산
 - 실버산업 활성화 단계에 맞추어 실버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화 및 보급 확산(안내서 및 On-Line 상 보급)

1. 노인복지용품의 법적근거 마련

□ 개 요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복지용품의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시장규모나, 제조·유통 및 소비실태 등에 대한 파악이 안되고 있고, 관련 법적근거가 미비하며, 용품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통일된 용어마저 없는 실정

< 각국의 사례 >

- ※ 우리나라 : 실버용품, 노인용품, 간호용품, 홈케어용품, 개호용품, 복지용품, 복지기기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
- ※ 일 본 : 개호용품, 가정용 재활용품 또는 장애인용품과 총괄하여 복지기기용품이라고 호칭
- ※ 미국, 유럽 : home care용품, 장애인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rehabilitation용품

□ 실천대책 : 노인복지용품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개인용 의료용구 등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노인복지용품의 정의를 명확히 정립
 - 장애인 용품의 경우 적극적 용어정의를 하는 대신에 관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90여개의 품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나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노인복지용품 법적정의(안) >

- 광의 : 제품자체의 기획·제작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생활속에 사

용할 환경까지 모든것이 정상인이 아닌 노인과 그들을 간호하는
간병인을 위한 용품

- 협의 : 노령에 의해 근력과 완력 등이 약해진 노인으로부터 중풍·치매 등 노인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재활, 간병, 자기치유 등을 위한 용품

- 노인복지용품의 정의를 노인복지법령에 두고, 관련법에서 이를 인용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노인복지용품 관련법>

- ※ 노인복지용품의 수입·생산·유통업체의 제품가격을 낮춰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세제감면(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농특세법 등)
- ※ 노인복지용품의 연구개발 및 보급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관련(산업표준화법 또는 별도의 근거법 신설)

□ 추진일정

- '02년 추진과제
 - 관계부처간 협의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
- '03년 추진과제
 - 노인복지용품에 대한 명칭, 정의 등을 반영할 법령 개정 작업 추진
 - 우선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용품의 진흥, 보급 활성화'라는 선언적 근거규정 포함
- '04년 추진과제 추진과제
 - 「실비용품 진흥에 관한 법」(가칭)의 제정 등을 검토함.

2. 민간 노인요양병원 설립지원

□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와 함께 질환노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용할 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이 부족하여 급성기 병상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의료비 과다 지출
- 유료시설의 확충 등 급증하는 요양수요에 대비 민간차원의 시설기반 확충 참여 활성화 필요

○ 추진방향

- 노인요양병원 등 민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재특자금을 통한 융자 등 지원 추진
- 종합병원에서 요양병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립자금 융자지원

□ 세부추진계획

○ 중소병원의 요양기관 기능 전환 지원

- 중소병원 중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하는 경우 재특자금을 통한 소요 시설비 및 장비비의 장기 저리 융자지원
 -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776개소(93,053병상)의 1/3인 258개소(31,017병상)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기능전환
- 융자조건 : 5년거치 10년상환, 변동금리

- 추진계획

(백만원)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병 원	258개소	27개소	27개소	77개소	127개소
병 상	31,017개	3,186개	3,186개	9,277개	15,368개
금 액	100,000	10,000	10,000	30,000	50,000

○ 노인요양병원, 유료요양시설 등에 대한 용자지원

- 재특자금 등을 활용, 지원이 필요한 병원, 시설 등에 용자지원
- 추진계획

(개소,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 요양병원, 시설 등 용자	-	-	20(15,000)	20(15,000)

3. 노인복지용품의 세제감면 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용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면세혜택이 있으나, 의료기기 등의 품목의 경우 관련혜택 없음.

- 정상적인 경우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 후 국내 유통됨이 원칙적이거나, 업계에서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입 및 통관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용품으로 변칙 신고하여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사례 : 성인용기저귀 사용량의 80%정도가 노인이지만 관세법상 노인복지용품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어 장애인기저귀로 신고하여

면세통관

※ 장애인품목의 경우 95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 면제

□ 실천대책

○ 수입관세 감면대상 확대 추진

- 장애인·노인복지용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수입관세 감면 품목을 검토하여 품목 수 확대 추진. 다만, 무작위적인 관세인하 보다는 국내 관련산업의 진흥측면을 고려하여 추진
- 노인복지용품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근거 마련과 병행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감면대상 확대

□ 추진일정

○ 2002년 및 2003년 추진과제

- 노인복지용품의 수요 및 국내생산·유통 실태 파악(연구용역 관련 예산 확보 후 추진)
-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하여 2003년 관련 세법 등 개정 추진

4. 실버산업 관련 정보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 실버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체계 미흡으로 국내 실버산업은 침체

- 국내 실버산업 규모는 성장초기 단계, 2010년에는 40조원 규모로 성장전망

○ 실버상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의 체계적 제공 미흡

- 관련 업체 및 기관별로 개별적인 정보제공 수준

- 구전정보, 광고매체를 통한 정보에 의존하고 가족을 통한 대리구매 많음
- 노인상품의 설명서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며, 방문·통신판매를 통한 피해에 노출
- ※ 2000년 소보원에 접수된 노인계층의 노인용품 피해구제건수 중 77.8%가 방문·통신판매임

<민간기업의 접근방안(삼성경제연구소)>

- 장기요양서비스 : 재가서비스, 노인건강/보조기구, 고령과 진료관련
- 건강식품 등 : 노인자동화, 노인용 가전제품, 노인건강자문서비스, 노인오락(음악, 영화, 게임)
- 여행 등 : 의복, 애완동물
- 보험
- 자산운용서비스
- 노인주택 등 : 식사택배서비스, 장의서비스, 노인교육

□ 대책

- 실버산업 활성화 단계에 맞추어 실버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화 및 보급 확산
- 안내서 및 On-Line 상 보급

<대응방안 사례(삼성경제연구소)>

-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는 긍정적 요소(국가산업 발전) 및 부정적 요소(국민부담 증가 등)를 고려하여 전략적 접근 필요

- 위협적 요소

- 국민적 부담 증가, 시설부족, 경제성장 둔화, 노인의 소외감 유발

- 기회요소

- 노후생활의 안정화, 노인욕구에 맞춤화 기회 조기 실현

□ 추진일정

○ '03년 추진과제 : 관련 정보의 체계화

○ '04년 추진과제 : 관련 책자 보급

○ '05년 추진과제 : 관련 정보의 시스템 보급

□ 유관기관 협조 : 산업자원부,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V. 정책 추진체계 구축

○ 노인복지 행정조직 기능강화 및 연계체계 구축

— 노인행정조직의 개편

- 노인업무의 범정부적 총괄·조정기구 신설: 국무총리 산하에 「고령사회대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구성·운영
- 보건복지부에 노인정책국 신설

— 중앙과 지자체간 연계체계 강화

- 중앙과 지방간 기능적 연계강화를 위하여 중앙고령사회대책위원회에 연계하는 지방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 일반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별 재정편차의 탄력적 조정을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노인복지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 필요
- 사업분야별 전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협조 사항 등 기능 분류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보완하여 나가되,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노인정책(보건복지, 소득보장 및 고용, 주거환경, 교육·문화, 교통여건 등) 전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통의 이념에 기초하여 각종 시책을 종합적 추진 필요

1. 노인복지 행정조직 기능강화 및 연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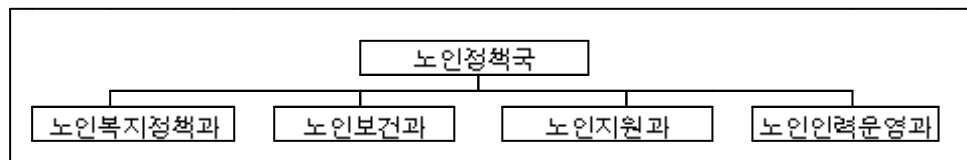
가. 노인행정조직의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업무는 종합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소관이 부처별로 분산
 - 이들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기구 부재
 -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에는 증가하는 노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조직·인력 부족
 - 독립된 국이 없이 현행 2개 과(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보건과)로는 현상유지 기능만 가능하며, 급증하는 노인 복지수요에 전문적·체계적 대응에는 미흡
- ※ 일본은 '93년 노인보건복지국 신설, 미국은 '65년 노인청 신설

□ 대책

- 노인업무의 범정부적 총괄·조정기구 신설
 - 국무총리 산하에 「고령사회대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구성·운영
- 보건복지부에 노인정책국 신설
 - 노인정책국은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보건과, 노인지원과, 노인인력운영과로 구성(가칭)



□ 추진일정

- 2002년 : 고령사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세칙(안)과 노인복지국 직제 신설(안)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 2003년 : 관계법령 개정 및 조직 발족

□ 법령개정

- 노인복지법제5조에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 기존 법제5조의 노인복지대책위원회 규정은 '89년 신설 99.2월 폐지
 - 위원회 기능·운영관련 내용은 시행령제2조~10조에 규정(99.8월폐지)
- 노인복지국 신설은 보건복지부 직제규정 개정

□ 주요 협조기관

-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나. 중앙과 지자체간 연계체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업무와 예산측면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기능연계 미흡
- 전반적인 예산부족과 지역별 재정편차가 예산배정에 미반영
 - 급증하는 노인복지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일반예산으로는 역부족

□ 대책

- 중앙과 지방간 기능적 연계강화를 위하여 중앙고령사회대책위원회에 연계하는 지방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 일반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별 재정편차의 단력적 조정을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노인복지기금 설치 필요
- 사업분야별 전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협조 사항 등 기능 분류

□ 추진일정

- 2002년 : 관계 법령개정(안)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2003년 : 법령개정
- 2004년 : 중앙과 지방간 기능연계방안을 지속적 검토·실행, 노인복지기금설치(안) 검토

□ 법령개정

- 지방고령사회대책위원회 규정 신설
- 중앙과 지방간 기능·역할을 노인복지법에 명시
- 노인복지기금 관련 규정 신설

□ 주요협조기관

-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2.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 개 요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복지법의 한계
 - 현행 노인복지법은 고령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노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
 - '81년 제정된 후 4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경로연금, 노

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저소득층의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에 중점

- 특히 노인문제는 현재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히 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득보장, 고용촉진, 보건의료, 노인주거, 노인 교육·문화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현행 노인복지법인 단일법으로 대처하는 데는 정책적·현실적으로 한계

○ 추진방향

-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보완하여 나가되,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노인정책(보건복지, 소득보장 및 고용, 주거환경, 교육·문화, 교통여건 등) 전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통의 이념에 기초하여 각종 시책을 종합적 추진 필요

□ 기본법의 주요 내용

○ 위상과 목적

- 종합적이고 다양한 노인정책에 대한 모범적 성격
-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될 현역세대까지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가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법제

○ 주요내용

- 총칙 : 목적, 기본이념, 국가 및 자치단체 책임, 국민의 노력의무 등
- 기본정책 :
 -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정책 전반에 걸친 명시적 근거 마련

- 보건복지·고용·소득보장·주거·교통·교육·문화·기타 노인편의를 위한 생활환경 등

- 추진체계 : 「고령사회 대책위원회」설치·운영
-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집행·평가 의무화

□ 노인복지관련 법 체계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 노인정책 전반에 관한 모법적·기본적 이념, 추진체계,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책 등을 규정

○ 노인복지법

- 노인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규정하는 등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 중 노인보건·복지부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 고령자 고용 촉진법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등의 이념에 따라 노인고용·직업훈련·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정비)

□ 추진일정

○ '02년 추진과제

- 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 '03년 추진과제

- 정부 입법계획에 반영하여 하반기 정기국회 기간내 제출 목표

※ 2005년 시행 목표

○ '04년 이후 추진과제

- 노인보건 및 요양보호 관련 사항을 종전 노인복지법의 영역에서

- 분리하거나 새로이 제도도입을 검토하여 나가되,
- 우선 기본법 제정 및 이를 위한 정책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면서 그 추이를 보아 노인보건법 등 관련제도 제정 추진